
2023년 관세사 관련 세법개정안

2023. 7.

한 국 관 세 사 회

목 차

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

1. 납세자 권익 보호

- (1)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(관세법) 1
- (2)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(관세법) 2

2. 조세회피 관리 강화

- (3)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(관세법) 3
- (4) 관세포탈 등 명단공개 대상 확대(관세법·령) 4
- (5)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(FTA특례법) 5

기타

- (1) 관세조사 정의 및 범위 합리화(관세법) 6
 - (2) 과세자료 확보 실효성 제고(관세법·령) 7
 - (3) 관세부과 제척기간 예외 확대(관세법) 8
 - (4)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료요구 사유 추가(관세법) 9
 - (5) 용도세율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(관세법) 10
 - (6) 품목분류 사전심사·재심사 제도 보완(관세법) 11
 - (7) 관세 중복조사 허용사유 정비(관세법) 11
 - (8)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미이행 제재 신설(관세법·령) 12
 - (9) 선상 견본품 반출·채취 절차 마련(관세법) 12
 - (10)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사항 변경(관세법) 13
 - (11) 미성년자의 보세사 시험 응시 허용(관세법) 13
 - (12)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추가(관세법) 14
 - (13) 여행자 휴대품 유치 사유 추가(관세법) 14
 - (14) 보세운송수단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(관세법·령) 15
 - (15)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특례절차 도입(관세법·칙) 15
 - (16)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 위임근거 마련(관세법) 16
 - (17)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(관세법·령) 16
 - (18)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(관세법·칙) 17
 - (19)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적용기한 종료(조특법) 18
 - (20)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) 18
 - (21) 관세청의 FTA 활용 지원사업 대상 확대(FTA특례법) 18
 - (22) FTA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명확화(FTA특례법) 19
- ※ 세법개정 추진일정 20

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

(1)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(관세법 §42의2①)

- 보정기간(신고납부일부터 6개월) 경과 후 일정 기간 내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을 확대*

* (현 행) (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) 20%, (6개월~1년 6개월) 10%
 (개정안) (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) 30%, (6개월~1년) 20%, (1년~1년 6개월) 10%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수정신고시 가산세 경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: 20% ○ 보정기간 경과후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하: 10% 	<input type="checkbox"/> 가산세 경감률 상향 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: 30% ○ 보정기간 경과후 6개월 초과 1년 이하: 20% ○ 보정기간 경과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하: 10%

〈개정이유〉 납세자의 조속한 수정신고 유도

〈적용시기〉 '24.1.1. 이후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

(2)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(관세법 §247③)

-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물품 검사 시 부과하는 수수료* 폐지

* 기본수수료(소요시간×2천원) + 실비상당액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세관 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수료 부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계산 방법 : 기본수수료(소요시간×2천원) + 실비상당액 (공무원 여비규정에서 정하는 교통비·숙박비·실비) ○ 부과제외 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검사장소가 영업용 보세창고인 경우* * 화주가 보관료를 부담하므로 화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제외 ② 수출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	<p><삭 제></p>

<개정이유> 수출입기업 부담 완화

<적용시기> '24.1.1. 이후 검사하는 분부터 적용

(3)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(관세법 §56의2 신설)

- 덤핑방지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덤핑* 물품에 대해서도 덤핑방지 관세를 동일하게 부과

*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에 있어 경미한 변경을 통해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우회덤핑 방지제도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회덤핑 물품*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가능 * 덤핑방지관세 부과 물품에 경미한 변경 등을 통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하는 물품 ○ 우회덤핑 물품의 경우 잠정조치 및 약속 미적용 ○ 우회덤핑 조사개시 이후 수입분부터 소급부과 ○ 우회덤핑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

<개정이유> 우회덤핑 차단을 통한 덤핑방지제도 실효성 제고

<적용시기> '25.1.1. 이후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

(4) 관세포탈 등 명단공개 대상 확대(관세법 §116의2, 관세령 §141의5)

- 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포탈관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·포탈관세액 등 공개*

* (현행)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만 공개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○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 <추 가>	<input type="checkbox"/> 명단공개 대상 확대 ○ (좌 동) ○ 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관세액 등이 2억원 이상인 자

<개정이유>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

(5) 원산지인증수출자*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
(FTA특례법 §44)

*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원산지증명능력 등이 있다고 인정받아, FTA협정 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에 관해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는 수출자

-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시 필요한 자료를 거짓 제출하거나 고의로 미제출하는 등 부정행위에 대해 처벌* 근거 마련

* 2,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행위 방법으로 신청해 발급받았거나 작성·발급한 자 ○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 제출 또는 고의로 미제출한 자 등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부과 대상 추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○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행위 방법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받은 자

<개정이유>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의 신뢰성 제고

<적용시기> '24.1.1. 이후 인증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[관세]

(1) 관세조사 정의 및 범위 합리화(관세법 §2, §110② 등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관세조사 정의가 납세자 권리 현장(§110) 및 통합조사 원칙 (§110의2)에 분산되어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납세자권리현장, 법 §110)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(§110의2 통합조사 포함) ○ (통합조사 원칙, 법 §110의2) 신고납부세액과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 	<p>□ 관세조사 정의규정 정비·이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세 과세표준·세율·세액을 결정·경정하거나,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·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는 행위 (세액심사는 제외)

〈개정이유〉 법령체계 정비

(2) 과세자료 확보 실효성 제고(관세법 §12, 관세령 §3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신고·제출 자료 보관 의무 ○ 보관대상 -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 <추 가> ○ (보관기간) 제출일부터 5년 ○ 보관방법 - 장부·서류, 정보보존 장치 <추 가>	<input type="checkbox"/> 장부 및 증거서류의 작성·보관 의무 부여 ○ 보관대상 <삭 제> -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(특수관계자 수입 물품 과세가격결정 관련 자료 포함) ○ (좌 동) - (좌 동) -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

<개정이유> 과세행정 합리화 및 과세형평성 제고

<적용시기> '24.1.1. 이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

(3) 관세부과 제척기간 예외 확대(관세법 §21①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세부과 제척기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원칙)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 (부정행위의 경우 10년 이내) ○ 예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불복결정·소송판결 등이 있는 경우: 확정일부터 1년 -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등의 확인 요청: 회신일부터 1년 - 경정청구·가격조정 결정 통지가 있는 경우: 청구일·통지일부터 2개월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특례적용 사유 추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- 불복신청·소송 등의 결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: 결정·판결 확정일부터 1년

<개정이유> 관세부과 제척기간 특례 합리화

<적용시기> '24.1.1. 이후 결정·판결 확정 분부터 적용

(4)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료요구 사유 추가(관세법 §37의4①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특수관계자 자료요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요구대상) 과세가격결정 자료, 증명자료* *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산요소를 안분·계산하기 위한 자료 ○ (자료제출 방법·범위) ○ (요구시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세액심사 시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자료요구 사유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관세조사 시</p>

<개정이유> 관세조사 조항의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

<적용시기> '24.1.1. 이후 자료요구 분부터 적용

(5) 용도세율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(관세법 §83①,②, §108②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용도세율 적용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9개 탄력세율제도 * 잠정세율, 긴급·특정국물품긴급·특별긴급·조정·할당·계절·국제협력·일반특혜 관세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 <input type="checkbox"/> 용도세율 신청제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용도의 사용 및 양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원칙) 용도의 사용 및 양도 금지 ○ (예외) 다음 각 호의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은 경우 - 용도세율 적용 신청을 제외받은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후관리 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용도세율, 관세감면, 분할납부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대상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○ 덤핑방지·상계·보복·편의 관세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제외 대상 의미 명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용도세율 전용물품으로서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예외적 허용 대상 정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삭 제></p>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후관리 예외규정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○ 용도세율 전용물품의 경우 사후관리 제외 가능

<개정이유> 용도세율 제도 조문 정비 및 실효성 제고

<적용시기> '24.1.1.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

(6) 품목분류 사전심사·재심사 제도 보완(관세법 §86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결정 * 현재 관세청 훈령으로 집행하고 있는 사항의 법적근거 보완 ○ 사전심사 신청 없이도 관세청장은 품목분류 결정 가능 ○ 이 경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은 고시 또는 공표

<개정이유> 품목분류 결정 관련 규정 보완

(7) 관세 중복조사 허용사유 정비(관세법 §111②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관세 중복조사 허용사유 ○ 관세포탈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○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 상대방을 조사할 경우 ○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○ 세관공무원에게 직무 관련 금품제공·알선한 경우 ○ 탈세혐의자에 대해 일제조사 하는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 관세 중복조사 허용사유 수정 ○ 관세포탈 → 관세탈루 ○ (좌 동)

<개정이유> 관세 중복조사 허용사유 합리화

<적용시기> '24.1.1. 이후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

(8)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미이행 제재 신설
(관세법 §116, 관세령 §141의4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○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및 과세정보 제공업무 대행자는 과세정보 유출 방지 의무를 이행할 필요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div>	<input type="checkbox"/> 미이행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○ (좌 동) ○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미흡시 시정요구 가능 ○ 시정요구 미이행시, 과세정보 제공 중지 또는 제공범위 제한

<개정이유> 과세정보 보호의 실효성 제고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 이후 시정요구하는 분부터 적용

(9) 선상 견본품 반출·채취 절차 마련(관세법 §161①·④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견본품 반출·채취 대상 ○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·반출 가능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div>	<input type="checkbox"/> 대상 확대 ○ (좌 동) ○ 국제무역선에서 외국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·반출 가능

<개정이유> 선상 견본품 채취·반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

<적용시기> '24.1.1. 이후 견본품을 반출·채취하는 분부터 적용

(10)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사항 변경(관세법 §164⑤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물품 반출입 상황을 장부에 기록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관리사항 변경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삭 제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율관리보세구역에서 관세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생략하는 절차*를 기록·관리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* 물품 반출입 시 세관공무원의 참여 등</p>

<개정이유> 물품관리 및 세관감시에 필요한 절차 중 생략하는 절차에 대한 기록·관리 의무 법령화

<적용시기> '24.1.1. 이후부터 적용

(11) 미성년자의 보세사 시험 응시 허용(관세법 §165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보세사의 자격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보세사 시험에 합격한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등 - 미성년자 ○ 보세사 등록 불가능한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등록이 취소된지 2년 지나지 않은 자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요건 변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좌 동)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삭 제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좌 동) - 등록신청일 기준 미성년자

<개정이유> 미성년자의 보세사 시험 관련 규정 합리화

<적용시기> '24.1.1. 이후 보세사 시험 응시분부터 적용

(12)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추가(관세법 §175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미성년자,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등 ○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죄, 납세자의 명의대여죄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결격사유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○ (좌 동) ○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

<개정이유>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 확대

<적용시기> '24.1.1.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

(13) 여행자 휴대품 유치 사유 추가(관세법 §206①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휴대품 유치* 사유 <p style="font-size: small;">* 여행자 휴대품이 관세 미납부 등 통관 조건 미비 시 통관을 보류하고 세관이 인계받아 보관하는 것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출입 관련 허가·승인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○ 사회안전·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휴대품 유치 사유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○ 국세징수법·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

<개정이유> 체납자 휴대품 유치 법적 근거 마련

<적용시기> '24.1.1. 이후 반입하는 휴대품부터 적용

(14) 보세운송수단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
(관세법 §216·§277⑤, 관세령 별표5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보세운송 관련 의무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<input type="checkbox"/> 과태료 부과 대상 - 운송통로 이탈 금지 위반 - 운송기간 경과 금지 위반 <추 가>	<input type="checkbox"/>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 ○ (좌 동) - 보세구역 출발 전에 신고한 운송수단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운송 금지 위반

<개정이유> 보세운송 관련 의무이행 실효성 제고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 이후 보세운송수단을 신고한 분부터 적용

(15)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특례절차 도입
(관세법 §222의2 및 관세칙§73의3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*에 의한 보세운송 절차 마련 * 무역을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 <input type="checkbox"/> 환적, 수출신고수리 물품에 한해 국제항 내에서 보세운송 허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보세운송 신고 및 절차는 기존 보세운송 제도 준용

<개정이유> 국제항 내 물품 운송의 효율성 제고

<적용시기> 규칙 시행일 이후 보세운송 신고 분부터 적용

(16)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 위임근거 마련(관세법 §224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 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제재수단) 등록 취소, 6개월 범위 내의 업무정지,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○ 제재사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거짓·부정으로 등록한 경우 - 운영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등 	<input type="checkbox"/> 관세법에 위임근거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취소, 6개월 범위 내의 업무정지,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○ (좌 동)

〈개정이유〉 행정제재의 법적 위임근거 마련

〈적용시기〉 '24.1.1. 이후부터 적용

(17)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(관세법 §246의2②, 관세령 §251의2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세관의 물품검사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리할 수 없는 경우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검사대상 물품 :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 ○ 수리할 수 있는 경우: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	<input type="checkbox"/> 손실보상 대상을 포장용기, 운반수단 등의 손실로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좌 동) ② 포장용기·운반수단, 운송수단 :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한 금액(국내판매가격 한도 내) ○ (좌 동)

〈개정이유〉 세관공무원의 적극적 물품검사 유도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검사하는 물품부터 적용

(18)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(관세법 §327의2·§327의3, 관세칙 §87)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
<p>□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</p> <p>○ 처분 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자의 자격미달 - 거짓 또는 부정한 지정 - 비밀유지의무 위반 - 설비·인력 등 지정기준 미달 - 관세청장의 지도·감독 위반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 <p>○ 처분 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자의 자격 미달, 거짓·부정한 지정: 지정취소 - 그 외 위반 사유 : 지정취소 또는 1년 이내 업무정지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	<p>□ 처분 대상에 시정명령 추가 및 업무정지 기준 명확화</p> <p>○ (좌 동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정명령* 위반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*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및 전자문서중계 안전성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</p> <p>- (좌 동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처분내용 세부기준 마련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업무정지 기준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 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차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차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차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정기준 미달</td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개월</td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개월</td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년</td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정취소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도·감독 위반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정명령 위반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비밀유지의무 위반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정취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1차	2차	3차	4차	지정기준 미달	3개월	6개월	1년	지정취소	지도·감독 위반	시정명령 위반	비밀유지의무 위반	1년	지정취소	-	
구 분	1차	2차	3차	4차														
지정기준 미달	3개월	6개월	1년	지정취소														
지도·감독 위반																		
시정명령 위반																		
비밀유지의무 위반	1년	지정취소	-															

<개정이유>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및 전자문서중계 안전성 제고

<적용시기> 규칙 시행일 이후 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

(19)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적용기한 종료(조특법 §121의10, §121의11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❶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수입하는 연구개발용 물품 및 ❷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의 관세 면제 ○ (적용기한) '23.12.31.	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기한 종료

〈개정이유〉 세제지원 실효성 낮음

(20)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 (조특법 §126의7⑨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를 위해 금지금공급사업자가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 ○ (적용기한) '23.12.31.	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기한 연장 ○ '26.12.31.

〈개정이유〉 금 현물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거래 양성화 지원

(21) 관세청의 FTA 활용 지원사업 대상 확대(FTA특례법 §13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원산지증명 지원사업 대상 ○ 중소기업 <추 가>	<input type="checkbox"/> 대상 확대 ○ (좌 동) ○ 중소기업이 아닌 농·어업인

〈개정이유〉 농·어업인의 FTA 활용 지원 강화

〈적용시기〉 '24.1.1. 이후 지원하는 분부터 적용

(22) FTA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명확화
(FTA특례법 §36의2 신설, FTA특례령 §47의2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FTA협정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보정이자 징수·면제 규정 부재 → 「관세법」 규정* 적용</p> <p>* 「FTA특례법」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관세법」 적용(「FTA특례법」 §3①)</p> <p>○ (원칙) 보정이자 징수</p> <p>○ (예외)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면제(「관세법」 §38의2⑤)</p> <p>-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로 보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</p> <p>※ FTA협정관세는 일반 관세와는 달리, 계약상대국에서 작성·발행하는 원산지 증빙서류에 따라 적용 여부 결정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면제사유 명확화</p> <p>○ (좌 동)</p> <p>-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로 보정신청을 하는 경우 등* 추가</p> <p>* ① 원산지증빙서류에 수입자 귀책 없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산지 조사 통지를 받기 전 보정 신청한 경우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계약 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계약상대국에서 기간 내에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 등</p>

〈개정이유〉 보정이자 면제사유 명확화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세액보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세법개정 추진일정

1 개정대상 법률 : 총 15개

내국세(13개)

- 국세기본법, 소득세법, 법인세법, 상속세 및 증여세법, 부가가치세법, 인지세법, 주세법, 교육세법, 농어촌특별세법, 국세징수법, 조세특례제한법,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,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

관세(2개)

- 관세법,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

2 추진일정

7월 27일(목) :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

7월 28일(금) ~ 8월 11일(금) : 입법예고(14일간)

8월 29일(화) : 국무회의

9월 1일(금) : 정기국회 제출